

#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602
----------	------

제출년월일 : 2007. 8.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최용신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기념관의 휴관일과 관람시간 등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및 추석과 매주 월요일로 정함
-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함

나. 전시 및 소장유물을 수집하고 감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수집대상유물의 범위를 설정하고 유물수집방법과 유물감정평가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규정
- 전시 및 소장유물의 수집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함

다.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
- 전시, 연구, 유물수집, 사회교육, 홍보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라. 유물의 관리 및 대여에 대한 근거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소장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및 대여에 대한 조건을 규정
- 유물대여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마련함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 · 제12조 · 제23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186,388천원
  - 산출내역 : 별첨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07. 10. 10. ~ 2007. 10. 19.(10일)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용신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최용신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빛나길 56번지 (본오동)에 둔다.

제3조(업무) 기념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용신의 생애 및 업적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2. 소장품의 보관, 보존 및 전시
3. 유물의 구입 및 대여
4. 강연회·강습회 및 각종 행사의 개최
5. 기념관 자료의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포함)
2. 매주 월요일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 ③ 임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휴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휴관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3. 보호자가 없는 유아
4.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단으로 조명 촬영을 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4.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 및 전시품을 파손·오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수집)** 유물수집은 최용신과 주변 인물들의 생애·업적 등에 관련되어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문적 연구조사 등이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10조(유물구입)** ① 시장은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일간지 또는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도신청된 유물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위원 2인 이상의 감정평리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제11조(유물감정평가위원)** 유물감정평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등록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구입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의 문화재구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

**제12조(유물감정평가위원수당지급)** 시장은 유물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료,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유물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물감정평가위원이 결정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최용신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이 가능한 문화계 인사 및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념관의 전시운영, 연구, 유물의 수집·구입, 사회교육, 홍보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유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을 넣어 둘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유물의 도난·파손·화재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한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기념관의 수장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유물은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물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유물의 대여)** ① 시장은 기념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박물관 등이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유물을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여목적, 기간 등을 명시하고 분실·멸실에 대한 보험가입 등 대여조건을 갖추어 대여일 1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유물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준수사항)** 제21조에 의하여 유물을 대여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유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유물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대한 비용의 부담

3. 대여기간 중 유물이 훼손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변상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3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① 시장은 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이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유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문화관광과 박석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문화종교담당 박영옥
	담당자 성명·전화	이세나 (행정 2794)

#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602
----------	------

제안년월일 : 2007. 9. 5.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장

## 1. 수 정 이 유

- 일부 불명확한 공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함.

## 2. 주 요 골자

- 제6조 제2항 중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함
- 제10조 제2항 중 “매도 신청된”을 “매입 신청된”으로 수정함.
- 안 제11조 제3호 중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함.

#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제10조 제2항 중 “매도 신청된”을 “매입 신청된”으로 한다.**

**제11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구입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관람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제6조(관람금지) .....		.....
1. 술에 취한 사람		1. ....		
2. <u>정신질환이 있는 사람</u>		2. <u>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u>		
3. 보호자가 없는 유아		3. ....		
4.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		.....
제7조~제9조(생략)		제7조~제9조(원안과 같음)		
제10조(유물구입) ① 시장은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일간지 또는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구입) ① .....		.....
② <u>매도신청된</u> 유물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위원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u>매입신청된</u> .....		.....
제11조(유물감정평가위원) 유물감정평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유물감정평가위원) .....		.....
1. 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 ....		
2. 등록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		
3. 구입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구입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의 문화재구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		4. ....		.....